

## 입양지원프로그램(ADOPTION ASSISTANCE PROGRAM) 승인서(STATEMENT OF ACKNOWLEDGEMENT)

### 입양지원프로그램

미국 의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족에 대한 재정적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조성하였습니다(공법 96-272 - 1980년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을 통해). 주 의회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 위탁보호 체계 하에 있었던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간혹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양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입양지원프로그램(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을 신설했습니다. 프로그램 창안 시, 주 의회는 가정 위탁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이 주는 든든함과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은 Title IV-E에 따라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금 또는 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의 자금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AP를 신청하려면, 입양 가정은 그들의 인가된 입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지원프로그램(AAP 1) 수당 신청서 양식(Request for 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 1) Benefit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에서 해당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지원 수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이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은 입양 최종 승인 전에 양부모와 협의를 거쳐 입양 지원 합의서나 입양 지원 유예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재정 지원 금액은 해당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내용과 입양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합의된 액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AAP 수당을 받는 입양 아동은 전세계 어느곳으로든 이주할 수 있으며, 18세, 혹은 경우에 따라 21세까지 매월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경상적입양 비용

양부모는 복지 기관법(W&IC) 섹션 16120.1에 따라 비경상적입양 비용에 대해 아동당 최고 400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입양 아동이 세 파트의 특별 지원 결정에 부응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W&IC 섹션 16120 (a) ~ (c) 및 (l)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입양시 연방 및 주 세금 혜택에 대한 고지

양부모가 특별 지원이 요구되는 유자격 아동을 입양할 경우, 1986년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의 섹션 23(26 U.S.C. Sec. 23)에 따라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17052.25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 하에 있던 입양 아동에 대해 주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방 세액 공제 정보와 8839 양식을 요청하려면 국세청 연락처, [www.irs.gov](http://www.irs.gov) 또는 1 (800) 829-104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 세액 공제 정보(아동 입양 비용 공제-세금 공제법 197)를 요청하려면 캘리포니아주 특권세무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의 연락처, [www.ftb.ca.gov](http://www.ftb.ca.gov) 또는 1 (800) 852-5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본인은/우리는 본 승인서를 읽었고 본인/우리의 입양 사회 복지사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입양과 관련하여 본 승인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음을 본인/우리의 서명을 통해 표명하는바입니다.

예비 입양 부모 서명:	날짜:
예비 입양 부모 서명:	날짜:
입양 사회복지사 서명:	날짜: